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mfds.go.kr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이드라인

희망의 새시대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행복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CONTENTS

목 차

1.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 3

2.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권장표시 ---------- 4

3.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권장표시사례 -------- 5

4.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잘못된 표시사례 ------ 6

5.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세부 표시방법 -------- 8

6. 세트 제품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방법 --- 10

7. 내포장 제품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방법 - 11

8.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주요 Q&A ---------- 12

9.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주의사항 ------- 14

10. 글자크기 예시 ---------- 15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조 · 가공 · 소분 · 수입한 식품

유통기한 표시 생략 가능 제품

자연상태의 농 · 임 · 수산물,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함),
식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 제외)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잼류,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함), 다류
및 커피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함),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함),
장류(메주 제외),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함),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조림식품(멸균에 한함),
맥주, 전분, 벌꿀, 밀가루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권장표시

- **주표시면(제품명 근처, 주표시면 상단)에 12포인트 이상 표시**
- 주표시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 윗면 또는아랫면에 표시
-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
-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권장표시〉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권장표시사례

캔, 병, 통조림 : 제품의 윗면 또는 아랫면에 표시

캔 제품

유리병 제품

플라스틱병 제품

통조림 제품

봉지, 박스, 지퍼락 제품 :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표시란을 마련하여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

봉지 제품

박스 제품

지퍼락 제품

용기제품 :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표시란을 마련하여 상단에 표시하거나 상품 진열시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잘못된 표시사례

잘못된 표시 예시

압인은 되어 있으나 글자색을 넣지 않아 바탕색과 구분이 안되는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상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유통기한을 문지르면 잘 지워지는 표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함
다만,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 스티커로 표시 가능

제품의 포장 내용과 거꾸로 표시하거나 다른 표시사항과 겹쳐서 표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거꾸로 또는 겹쳐서 표시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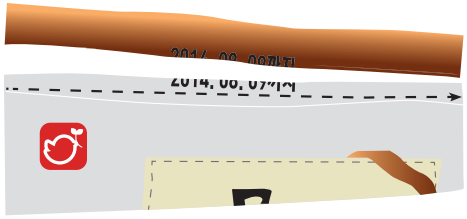

제품 상단 또는 하단을 잘라내고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절취하여 버려지는 부분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절취하여 버려지는 부분에 일자표시 하지 않기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세부 표시방법

유통기한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품질 유지기한

"○○년○○월○○일",
"○○.○○.○○",
"○○○○년○○월○○일"
"○○○○.○○.○○"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는
"○○월 ○○일 ○○시 까지", "○○일 ○○시 까지" 또는
"○○.○○.○○ 00:00 까지"로 표시
*** 제조일자와 제조시간 함께 표시**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에는
해당위치에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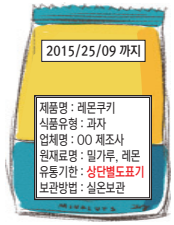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

(수출국 표시)

(한글 표시 사항)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의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의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

세트 제품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방법

- **유통기한이 여러가지인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표시

- **품질유지기한이 여러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 그 중 가장 짧은 품질유지기한 표시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된 개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시

내포장 제품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방법

- 최소 판매단위 포장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 나누어 개별 포장한 제품(**내포장 제품**)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 별로 **제품명, 내용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영양성분 표시대상에 한함)과 **영양성분**을 표시 할 수 있음. **(권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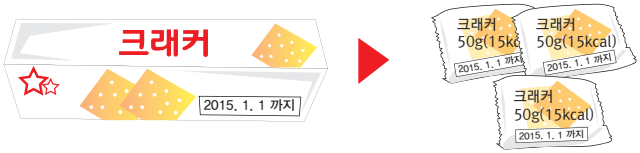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주요 Q&A

Q 유통기한 일부 내용이 틀린경우 (예시. 실제 유통기한은 2013.3.1 까지이나 2013. 1.3일로 표시) 수정이 가능한지요?

A 표시된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은 변경 · 훼손이 불가능함

(수정 전) (수정 불가)

Q 유통기한에 반드시 "까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A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은 '0000년 00월 00일 까지'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까지'를 표시하여야 함. 단, 품질유지기한은 '까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Q 세트포장제품의 개별제품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보다 더 짧게 표시가 가능한가요?

A 세트포장 제품의 개별제품은 각각 품목제조보고 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Q 마른멸치, 브로콜리 등 자연산물에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나요?

A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을 포장한 경우(진공포장이 아닌 비닐랩 등으로 투명 포장한 것은 제외) 제조일자(포장일 또는 생산연도)를 의무 표시하여야 하나, 유통기한은 의무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도 없음

Q 제조일자와 함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자 · 유통기한 각각의 일자만 표시해도 되나요?

A 일자만 각각 표시된 경우 일자의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제조일자 0000.00.00, 유통기한 0000.00.00 까지로 표시하여야 함

(잘못된 표시) (올바른 표시)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주의사항

- 자연상태의 농·임·수·축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 해서는 아니되며, 표시한 유통기한을 변경해서도 안됨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한 일자를 임의로 지우거나, 연장 또는 변경해서는 아니됨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에 물리적 행위(덧칠, 지우기, 오리기, 수정 등)로 조금이라도 훼손 또는 변경하는 경우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됨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에 2년으로 유통기한을 신고한 경우 식품에 표시한 유통기한도 2년으로 동일해야 함

바탕체, 굴림체, 휴면명조체 글자크기에 준하여 표시

글자크기 예시

[활자크기 : 바탕체 예시]

- 활자크기는 정해진 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함 -

5포인트 : 원재료명(포장면적 200㎠ 이하인 경우)

6포인트 : 제품명, 영양성분(포장면적 200㎠ 이하인 경우)

7포인트 : 원재료명(포장면적 200㎠ 초과인 경우)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8포인트 : 주의사항(포장면적 200㎠ 이하인 경우),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포장면적 200㎠ 초과인 경우)

10포인트 : 제조연월일, 주의사항(포장면적 200㎠ 초과인 경우)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포장면적 200㎠ 이하인 경우)

12포인트 :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포장면적 200㎠ 초과인 경우) 내용량

16포인트 : OEM

24포인트 : OEM

30포인트 : OEM

36포인트 : OEM

* '16년 부터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포장면적 200㎠ 초과인 경우)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희망의 새시대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행복